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김영래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개정,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2. 17. ~ 12. 21.)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와 정례회 운영사항 개정,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